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51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임호선·정준호·문대림

채현일 • 김동아 • 임미애

김승원 · 오세희 · 윤준병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홍보·마케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미 흡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신설 등).

법률 제 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개발
 - 2. 전통주 등의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 3. 전통주 등의 특허출원 및 사업화 촉진
 - 4. 전통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 5. 전통주 등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④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전통주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 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 한 정책의 수립・개발 2. 전통주 등의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3. 전통주 등의 특허출원 및 사 업화 촉진 4. 전통주 등의 등해출원 및 사 업화 촉진 4. 전통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5. 전통주 등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 탁하는 사업
- ④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 닌 자는 전통주산업진흥원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생 략)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1.</u> ~ <u>3.</u> (생 략)

③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 1.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sim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